

의안번호	2216689
의 퇴 인	조은희의원
회 답 일	2026.8.21.
추계번호	26D0788

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】

I. 비용추계 결과

- (일부추계) 개정안에 따라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사망 시 배우자에게 수당을 지급할 경우, 추가재정소요는 2028년부터 2032년까지 향후 5년간 1조 7,949억 7,000만원(연평균 3,589억 9,400만원)으로 추계됨
- 고엽제후유증 환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, 그 배우자 및 자녀에 대한 건강검진비 지원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발생이 예상되나, 검진 항목·범위·주기 및 기존 국가건강검진·보훈의료제도와와의 관계가 구체화되지 않아 추계대상에서 제외함

[표 1]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8~2032년

(단위: 백만원)

구 분	2028	2029	2030	2031	2032	합계	연평균
수당의 지급 (안 제7조의3)	291,302	320,175	353,690	392,489	437,314	1,794,970	358,994

주: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및 고엽제후유증2세 환자를 대상으로 한 건강검진비 지원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발생이 예상되나, 검진 항목·범위·주기 및 기존 국가건강검진·보훈의료제도와와의 관계가 구체화되지 않아 추가재정소요 추계결과에 포함되지 않음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I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7조의3(수당의 지급 등)	국가보훈부장관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각각의 장애등급(이하 “장애등급”이라 한다)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정된 사람(이하 “수당지급 대상자”라 한다)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배우자(수당지급 대상자인 고엽제후유의증환자가 사망한 경우에 한정)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음	재량규정
2	안 제7조의11(건강검진 지원)	국가보훈부 장관은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및 그 자녀에 대하여 「건강검진기본법」 제3조제1호에 따른 건강검진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(제1항) 제1항에 따른 건강검진의 시기·항목, 비용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(제2항)	재량규정

Ⅲ.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

1.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여부	비고(추계 미 실시 사유)
1	안 제7조의3(수당의 지급 등)	○	—
2	안 제7조의11(건강검진 지원)	×	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를 대상으로 한 건강검진비 지원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발생이 예상되나, 검진 항목·범위·주기 및 기존 국가건강검진·보훈의료제도와와의 관계가 구체화되지 않아 현 시점에서 합리적으로 추정하기 곤란함

2.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

- 개정안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가 사망한 경우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의 배우자도 수당지급 대상이 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추가재정소요 발생
 - 부칙 제2조에 따라 개정규정 시행 전에 사망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의 유족에 대해서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, 수당 승계인원은 2025년 기준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사망인원 43,941명에 2021~2024년 연평균 증가율 9.2%를 적용하여 산정
- 고엽제후유의증 수당의 월 지급액은 고도장애, 중등도장애, 경도장애 등 3등급으로 구분하여 지급하고 있으나, 사망자의 등급 관련 자료 부재로 등급별 단가를 고려하지 않고 2026년 평균지급단가에 최근 5년간 평균지급단가 연평균증가율을 적용하여 산정함
 - 보상금의 경우 본인이 수령하는 보상금 대비 유족 승계 보상금 비율은 약 50~90% 수준이며, 보상금 금액이 낮을수록 유족 승계 보상금 비율은 높은 경향이 있음
 - 수당의 경우, 유족에게 승계된 사례가 없고 보상금 대비 수당 금액이 낮은 경향이 있어 추계에서는 본인이 수령하는 수당의 100%가 유족에게 승계되는 것으로 가정함

[표 2]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수당(2026년 기준, 월지급액)

(단위: 천원)

대상별	고도장애	중등도장애	경도장애
고엽제후유의증 수당	1,296	954	626

자료: 국가보훈부

- 안 부칙에서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, 추계기간은 2028년부터 2032년까지 5년으로 함

3.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

가.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배우자에 대한 수당의 승계

- (수당지급 대상) 개정안에 따라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배우자에 대해 수당이 승계될 경우, 승계 배우자 수는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의 최근 5년간 사망자 수 증감율을 적용하여 추계기간의 사망자 수를 추정한 후, 그에 따른 배우자수를 추정
- 매년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사망자 수에 무공수훈자 유배우자율 72.1%를 적용하여 해당년도의 신규 수권 배우자 수를 추정한 후, 기 사망유공자의 배우자 수에 무공수훈자 배우자의 사망률 8.1%를 적용 후 신규 수권배우자 수를 합하여 누적 수권 배우자 수를 추정

[표 3] 고엽제수당 승계 배우자 수 추정: 2028~2032년

(단위: 명)

구분		2028	2029	2030	2031	2032
고엽제 후유의증 환자	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사망자 수(a)	3,558	3,852	4,170	4,514	4,887
	신규 승계 배우자 수($b=a \times \text{유배우자율}$)	2,565	2,777	3,007	3,255	3,524
	누적 수권 배우자 수($C_t = C_{t-1} \times (1 - \text{사망율}) + b$)	24,710	25,940	27,369	29,008	30,870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- (월 지급단가) 수당의 월 지급단가는 2025년 평균지급단가에 최근 5년간 평균지급단가 연평균증가율 4.7%를 적용하여 산정함

[표 4]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수당 월 지급단가 추정: 2028~2032년

(단위: 천원)

구 분	2028	2029	2030	2031	2032
월 지급단가	982.4	1,028.6	1,076.9	1,127.5	1,180.5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□ (추계결과) 누적 배우자 수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수당 월 지급단가에 12개월을 곱하여 산정한 추가재정소요는 아래 표와 같음

[표 5]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배우자에 대한 수당 승계 시 추가재정소요: 2028~2032년

(단위: 백만원)

구 분	2028	2029	2030	2031	2032	합계
추가재정소요	291,302	320,175	353,690	392,489	437,314	1,794,970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나. 추계결과

□ (일부추계) 개정안에 따라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사망 시 배우자에게 수당을 지급할 경우, 추가재정소요는 2028년부터 2032년까지 향후 5년간 1조 7,949억 7,000만원으로 추계됨

- 고엽제후유증 환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, 그 배우자 및 자녀에 대한 건강검진비 지원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발생이 예상되나, 검진 항목·범위·주기 및 기존 국가건강검진·보훈의료제도와와의 관계가 구체화되지 않아 추계대상에서 제외함

[표 6]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8~2032년

(단위: 백만원)

구 분	2028	2029	2030	2031	2032	합계
수당의 지급	291,302	320,175	353,690	392,489	437,314	1,794,970

주: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를 대상으로 한 건강검진비 지원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발생이 예상되나, 검진 항목·범위·주기 및 기존 국가건강검진·보훈의료제도와와의 관계가 구체화되지 않아 추가재정소요 추계결과에 포함되지 않음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IV. 부대의견

- 본 추계결과는 개정안에 따라 추가로 고엽제후유의증 수당 지급 대상이 된 인원을 2025년 기준 기 사망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수에 2021~2025년간 사망자수 증가율을 적용하여 향후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사망인원을 추정하고, 수당 지급단가는 등급별 지급단가를 고려하지 않고 2026년 평균지급단가에 최근 5년간 평균지급단가 인상률을 적용하여 산정한 결과로 실제 추가재정소요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음

V. 작성자

-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행정비용추계과	전수연	김안나

-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전수연	02-6788-4667	syjeon@assembly.go.kr